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0. 1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10. 13

라. 의안번호 : 제2005 - 54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안 제출 이유

○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정원을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 증원함.

○ 별지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

- 본청 : 정원 2명 삭감(6급 1명 증원, 7.8.9급 각 1명을 삭감)
- 농업기술센터 : 2명 증원(지도관을 일반직 4급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7.8급 각 1명 증원)
- 사업소 : 5명 증원(6급 1명, 7급 2명, 8.9급 각 1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도의 정원승인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7.12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명의 정원증원(6급1명, 7급1명, 8급2명, 9급1명)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196,403천원 정도임.

○ 현재 도서관개관 준비를 위하여 교육문화센터내 도서관담당에 3명의 정원을 확보·배치하고 있어 금회 정원 5명 추가시 총 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법정인원이 13명임을 감안할때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정원표에서 본청의 인력을 2명 삭감하고 기술센터에 2명을 증원한 것은 종전 경제과에서 담당하던 사이버농원 운영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것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조정한 것으로 사이버농원의 목적과 운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됨.

○ 별표의 본청의 일반직중 6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규정(6급은 총 정원의 27%범위내)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제를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관의 장인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의 직급과 같은 직급인 지방농업 또는 축산사무관 등으로 복수직렬화 하는 것은 보직관리의 원칙이나 정원책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이미 4급 일반직 또는 지도관으로 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상남도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은 사항임.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지도관 1명을 삭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해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의 개선요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조례규정에 의한 정원관리를 위하여는 앞으로 지도관 1명이 감축되어야 할 것임.

5.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서관업무를 위한 인력정원승인 통보 : 경상남도 행정과-7179(05.7.7)

6. 참고자료

1)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3 (668)	258 (260)	14	134 (132)	61 (59)	73	64 (59)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27 (521)	212 (214)	8	78 (75)	23 (20)	55	42 (37)	40	147
	4급	2 (1)	1	0	1 (0)	1 (0)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1	11	3	2	1	1	3	1	11
	6급	142 (140)	62 (61)	3	10	5	5	11 (10)	12	44
	7급	163 (161)	78 (79)	2	25 (24)	10 (9)	15	13 (11)	12	33
	8급	126 (125)	48 (49)	0	35 (34)	5 (4)	30	9 (8)	10	24
	9급	61	11 (12)	0	4	1	3	6 (5)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6급	1	1	0	0		0	0		
	6~7급	16	0	0	16		16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2 (33)	0	0	32 (33)	32 (33)	0	0	0	0
	지도관	2 (3)	0	0	2 (3)	2 (3)				
	지도사	30	0	0	30	30				
기능직	소계	92	43	6	6	4	2	21	5	11
	6급	3	1	0	1	0	1	1	0	0
	7급	9	3	1	2	1	1	3	0	0
	8급	14	2	2	0	0	0	3	1	6
	9급	28	18	1	1	1	0	6	1	1
	10급	38	19	2	2	2	0	8	3	4

주) ( )는 당초 정원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 (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

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등"이라 한다) 및 병영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7>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등을 둘 수 있다.

[별표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제4조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다.

- 기존 도서관 담당 3명 + 정원승인 5명 = 8명(최소 필수 인력)
- 법정소요인력 : 13명(사서) 이상
  - 면적기준 : 기준인원 3명+(2,406㎡-330)÷330 = 9.29명
  - 장서기준 : (30,000권-6000권)÷6,000권 = 4명

2 거창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0. 13

다. 의안번호 : 제2005 - 55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존의 「거창군여비조례」는「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과 상이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 ·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근무지내 출장 시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고, 전용차량배정 공무원(군수, 부군수)에 대하여는 지급치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존의 「거창군여비조례」는 1964. 3.10 제정된 후 1990.9.29까지 30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임.

○ 조례의 주요내용인 상시출장 여비 지급관련 규정은 기존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상이한 것은 운전원에게도 관내 출장여비(5천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중앙부처의「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운전원에 대하여 관내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회신되었음.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으로는 120민원기동대원, 상하수도검침원, 상하수도기동수리요원, 운전원, 보건지소공무원, 보건진료소공무원, 읍면공무원 으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임.

○ 기타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개정근거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 지방운전원에 대하여도 여비지급조례 제정지시 공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31(2005.4.15)
- 경상남도 감사관 -217592005.4.19)

5. 참고자료

거창군여비조례

제정1964-03-10 조례 47호(이후 1990.9.29까지 30회 개정)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 4. 26 조례 제1050호)

제 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여비정액 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본다. (개정 1989. 4. 26 조례 제1050호)

제 4조 (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83. 1. 8 조례 제676호)

제 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 6조 (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3. 1. 8 조례 제676호)

제 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하 생략 -